

1. 개정이유

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교육·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타 전문자격과 대비하여 교육시간이 부족하고, 최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 변경

나.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,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시간 확대 등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”을 “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로 하며, 교육 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”를 “64시간 이상으로 하며,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16시간 이상 17시간”을 “38시간 이상 60시간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사이버교육: 7시간 이상 9시간 이하”를 “사이버교육: 10시간 이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5시간 이상 6시간”을 “8시간 이상 16시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3시간 이상 4시간 이하”를 “8시간 이상으로”로, “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”을 “집합교육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로 하며,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”를 “16시간 이상으로 하며, 이중 사이버교육은 4시간 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3조 중 “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”을 “「행정규제기본법」 및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”으로, “2022년 1월 1일”을 “2025년 1월 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</u> <u>지침</u>	<u>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</u>
제8조(교육시간) ① 실무교육 시 간은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<u>28</u> <u>시간 이상 32시간 이하</u>로 하며, 교육방식별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. 1. 집합교육: <u>16시간 이상 17시</u> <u>간 이하</u> 2. <u>사이버교육: 7시간 이상 9시</u> <u>간 이하</u> 3. 현장실습: <u>5시간 이상 6시간</u> <u>이하</u> ② 직무교육 시간은 영 제28조 제2항에 따라 <u>3시간 이상 4시간</u> <u>이하</u>로 하며, 교육방식은 <u>집합</u> <u>교육 또는 사이버교육</u>으로 한 다. ③ 연수교육 시간은 영 제28조 제3항에 따라 <u>12시간 이상 16시</u> <u>간 이하</u>로 하며, 교육방식별 교 육시간은 다음과 같다.	제8조(교육시간) ① ----- ----- <u>64</u> <u>시간 이상</u>----- ----- ---. 1. ----- <u>38시간 이상 60시간</u> ----- 2. <u>사이버교육: 10시간 이하</u> 3. ----- <u>8시간 이상 16시간</u> - -- ② ----- ----- <u>8시간 이상</u>----- ----- <u>집합</u> <u>교육</u>----- ---. ③ ----- ----- <u>16시간 이상</u>으로 하며, 이중 <u>사이버교육은 4시간</u> <u>이하로 실시하여야 한다.</u>

1. <u>집합교육: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</u> 2. <u>사이버교육: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</u> ④·⑤ (생략) 제23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에 따라 <u>2022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<u><삭 제></u> <u><삭 제></u> ④·⑤ (현행과 같음) 제23조(재검토기한) ----- 「<u>행정규제기본법</u>」 및 「<u>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</u>」----- <u>2025년 1월 1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--	---